

2023년산 국산 두류 비축 약정 지침

I. 약정개요

1. 목적

- 2023년산 두류 파종기 전, 농가와 약정 체결을 통해 원활한 영농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코자 함
- 논콩 생산 유도과 국산콩의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을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용도별 가공적성을 고려한 품종구분 매입 실시

2. 약정기간

- 파종기 약정 대상 : 2023. 2. 22. ~ 6. 30.
 - 콩 10,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9,000톤,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간 내 실제 약정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 수확기 약정 대상 : 2023. 9월 ~ 10월
 - 콩 50,000톤(일반콩)
 - * '23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지침'으로 별도 안내(8월 예정)

3. 약정대상

- 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약정하되,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콩 품종구분 매입 대상은 대원콩, 대풍2호, 선풍, 대찬 품종에 한정
- * 이외 품종도 품종구분 매입이 아닌 일반매입 물량으로 수확기에 약정·매입 예정

4. 약정물량

- 콩 60,000톤(일반 59,000 / 콩나물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 지역별 배정물량은 붙임 시·도별 약정 배정물량 참조
 - 파종기 약정 대상(10,750톤) : 콩 10,000톤(일반콩-품종구분 매입 9,000, 콩나물콩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 수확기 약정 대상 : 콩 50,000톤(일반콩)
 - * 콩은 발콩 12,000톤(콩나물콩 1천톤 포함), 논콩 48,000톤으로 구분하여 매입하되, 수확기 약정·매입 대상 물량인 50,000톤은 '23년 두류계약재배 지원사업 실적, '23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 등을 배정 기준에 추가
 - * 매입콩은 '백태'에 한하여 매입
 - 콩 60,000톤 중 9,000톤은 품종(대원콩 1,000, 대풍2호 500, 선풍 4,500, 대찬 3,000)구분 약정·매입(매입규격은 대립중·중립중 특등급, 1등급에 한정)
- 매입약정 한도량 : (콩) 발 200kg/10a, 논 300~400kg/10a*, (팥·녹두) 150kg/10a
 - * 농가별 생산성 정도에 따라 매입약정 한도량을 300~400kg/10a 구간 중 선택해서 약정

5. 매입가격

(단위 : 원/kg)

구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중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중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중	4,120	3,850	3,650	3,270	2,680
콩나물콩	중립중	-	4,480	-	-	-
	소립중	5,000	4,660	-	-	-
팥		-	5,960	5,690	-	3,830
녹두		-	8,030	7,670	-	5,160

- 품종구분 매입가격 : '23년 12월 ~ '24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5.5%*(원단위 절사)
 -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서 유통비 제외(83%) × 품종구분 관리 노력비(1.03%)
 - * 일반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일반 매입가격으로 매입하고, 일반 매입가격보다 120%를 상회할 경우는 120% 가격으로 매입

- 대립종 특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증액
 -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55×1.025=4,820원
- 중립종 특등급 가격은 대립종 특등급 가격의 97.5% 가격으로 결정
- 대립종 일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 평균가격의 85.5%에 2.5% 감액
 -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55×0.975≒4,580원
- 중립종 일등급 가격은 대립종 일등급 가격의 97.5% 가격으로 결정

II. 매입약정 계획

1. 약정물량 배정기준

- 각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배정물량은 밭콩 면적, 논콩 면적, 논콩 전문생산단지 '23년 계획면적 등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에서 결정
- 지역별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서 조정
 -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추가 물량배정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 시·도(시·군, 읍·면·동)별 물량배정
 - 지역별 물량은 밭콩 면적, 논콩 면적, 논콩 전문생산단지 '23년 계획면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지자체에서는 농협(시도·시군지부)과 협의하여 배정물량 결정
 - 각 시·도(시·군, 읍·면·동)는 농협지역본부장(지부장)과 협의, 생산량(또는 재배면적), 매입실적,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읍·면·동)별 배정하고 농관원,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별 물량배정

- 농가별 물량은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논콩 재배면적 등 지역별 배정기준을 감안하여 결정
 - 물량 배정 시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동안 약정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고,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고의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

2. 약정체결

- 농협경제지주 농가별 약정 : 일반콩(품종구분) 3,500톤, 콩나물콩 800, 팥 500, 녹두 250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간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비축계획에 따라 매입·정산 추진
 - 콩 품종구분 매입 관련

- ◇ 매입물량 및 대상품종 : 3,500톤(대원콩 1,000, 대풍2호 500, 대찬 1,000, 선풍 1,000)
- ◇ 매입기관은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품종구분 매입 희망물량의 일부물량에 대해 우선 참여 권한 부여
 - * 매입기관이 배정 한도물량 내에서 배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구분 매입이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 * 동일 필지를 품종구분 매입과 '23년 신규 추진하는 두류 계약재배 사업 간 중복 약정 금지
-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을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 매입약정 체결 주관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에서 전담
 - 농협 및 지자체는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매입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하여 시행
- * 지역농협 관내 약정물량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조정 가능
- 지역본부에서는 콩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농협이 있는 지역에서 약정(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타지역에서 약정(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약정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생산자단체 등 약정 공통

-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매입을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 예산 부족 등으로 약정체결 물량과 실제 매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 콩 품종구분 매입 관련 >**
- *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비축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구분 매입 제외

- **생산자단체 등 약정** : 일반콩(품종구분) 5,500톤, 콩나물콩 20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및 국산콩 생산자연합회와 매입약정 체결
- 각 연합회 책임하에 배정물량에 따라 농가별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물량 전체를 논콩으로 한정
- 콩 품종구분 매입 관련

- ◇ 매입물량 및 대상품종 : 5,500톤(선풍 3,500, 대찬 2,000)
 -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 3,000톤(선풍 2,000톤, 대찬 1,000)
 -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2,500톤(선풍 1,500톤, 대찬 1,000)
- ◇ 매입기관은 정부지원 논콩 전문생산단지외 비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품종구분 매입 희망물량의 일부물량에 대해 우선 참여 권한 부여
- * 매입기관이 배정 한도물량 내에서 배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구분 매입이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 * **동일 필지를 품종구분 매입과 '23년 신규 추진하는 두류 계약재배사업 간 중복 약정 금지**
-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을 사용(동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3. 콩 매입포대

- 영농 규모에 따라 40kg(20kg) 또는 1,000kg 단위 포장재로 선택하여 약정 가능
- 다만, 효율적인 운송 및 검사 등을 위하여 40kg(20kg) 포대와 1,000kg 포대의 매입일정은 구분하여 실시
- 농관원,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매입 시 농업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단계부터 포대 선택사항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포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 * 농업인 매입 여건에 따라 40kg 포대와 1,000kg 병행 가능
- 농협에서는 매입포대(농산물검사 기준 및 품종 표시 가능한 포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PP대 준비 등 철저
 - * 콩 1,000kg 포대는 농업인이 비 매입포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III. 행정사항

- **약정체결 결과보고 : 2023. 7. 15.까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로부터 약정체결 결과를 취합하여 지역별·품목별 약정체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협경제지주,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로부터 농가별 약정실적을 취합하여 관리
 - * 콩 품종구분 매입약정 체결 결과 포함

□ 실 재배면적 조사

-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은 합동으로 실제 재배면적을 조사 (7월 중)하여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정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결과를 '23. 8. 5.까지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외된 농가물량은 콩 재배농가 중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에 재배정
- * 들녘경영체 및 콩생산자연합회에서도 실제 재배면적 조사 별도 실시 후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aT에 보고

□ 품종검증

- 콩 품종구분 매입 관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매입시 품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구분 매입 제외(일반매입은 가능)

붙임 1

2023년 시·도별 약정 배정물량

□ 파종기 약정 대상: 콩(일반콩-품종구분, 콩나물콩), 팥, 녹두

(단위: 톤)

구분	계	일반콩 (품종구분)	콩나물콩	팥	녹두
계	10,750	9,000	1,000	500	250
경기	379	348	-	20	11
강원	242	177	-	61	4
충북	405	317	40	42	6
충남	758	701	15	27	15
전북	4,513	4,411	15	80	7
전남	1,781	1,356	100	165	160
경북	1,217	1,121	25	61	10
경남	461	407	5	37	12
제주	915	90	800	1	24
특광역시	79	72	-	6	1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 약정
- 2. 일반콩(품종구분 매입) 물량 9천톤 중
 - 1천톤(대원콩)은 최근 5년간 발콩 재배면적 기준으로 배정
 - 8천톤(대풍2호·선풍·대찬)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50%) + 논콩 전문생산단지 '23년 계획면적(50%) 기준으로 배정
- 3. 콩나물콩·팥·녹두는 매입실적이 미미하여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 비율에 준하여 배정
- 4. 일반콩(품종구분 매입) 물량 9천톤 중 5.5천톤(선풍·대찬)과 콩나물콩 200톤은 aT 배정(콩나물콩 200톤은 국산콩생산자연합회 배정)

○ 일반콩(품종구분) 품종별 세부내역

(단위: 톤)

구분	계	일반콩(품종구분)					
		농협 약정 대상				aT 약정 대상	
		대원콩	대풍2호	선풍	대찬	선풍	대찬
계	9,000	1,000	500	1,000	1,000	3,500	2,000
경기	<u>348</u>	39	19	39	39	135	77
강원	<u>177</u>	20	10	20	20	69	<u>38</u>
충북	<u>317</u>	35	18	35	35	123	<u>71</u>
충남	<u>701</u>	78	39	78	78	273	<u>155</u>
전북	<u>4,411</u>	490	245	490	490	1,716	<u>980</u>
전남	<u>1,356</u>	151	75	151	151	527	301
경북	<u>1,121</u>	124	62	124	124	436	<u>251</u>
경남	<u>407</u>	45	23	45	45	158	<u>91</u>
제주	<u>90</u>	10	5	10	10	35	20
특광역시	<u>72</u>	8	4	8	8	28	16

※ 농협과 aT는 시·도(품종)별 한도량을 기준으로 약정을 체결하되, 필요 시 품종별 전체 물량배정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수확기 약정 대상(안): 콩(일반콩)

* '23년산 국산 두류 비축 수확기 약정지침(8월 예정)'에 '23년 두류계약재배 사업 참여 실적,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 등을 배정 기준에 반영하여 시·도별 배정 안내

(단위: 톤)

구분	합계	밭	논
계	50,000	10,000	40,00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지역별 배정물량은 논·밭별 재배면적, 논 타작물 신청면적, 매입실적, 전년도 배정 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 밭: 최근 5년간 밭콩 재배면적(50%) + 최근 5년간 매입실적(40%) + 전년도 배정물량(10%)
 - 논: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30%) + '23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30%) + 최근 5년간 매입실적(10%) + 전년도 배정물량(10%) + 두류계약재배 실적(20%)
3. 특광역시는 최근 3년간 매입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구분하지 않되, 약정기간 내 배정신청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물량 조정

붙임 2

'23년산 두류 매입 규격(안)

<일반콩>

□ 대립종·중립종·소립종

등급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정립 (%)	난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특등 표준품		95.0	80.0	14.0	5.0	0.0	0.0
1 등	1 등 표준품		90.0	80.0	14.0	10.0	0.5	0.5
2 등	2 등 표준품		85.0	80.0	14.0	15.0	1.0	1.0
3 등	3 등 표준품		75.0	80.0	14.0	25.0	1.5	1.5
등의	-		60.0	80.0	14.0	40.0	2.0	2.0

【기타 조건】

-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특등 0.0%, 1등 0.5%, 2등 1.0%, 3등 3.0%, 등의 5.0%로 한다.
- ③ 난알의 고르기는 다음관 같이 해당 등급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분	구분 방법
대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mm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mm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 ① 백분율(%) : 잔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색택, 난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난알을 말한다.
- ④ 난알의 고르기 :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등급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⑥ 피해립 : 손상된 난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난알을 말한다.
- ⑧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콩나물콩>

등급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발아율 (%)	정립 (%)	난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90	97.0	90.0	14.0	5.0	0.0	0.0
1 등		85	90.0	80.0	14.0	10.0	0.2	0.2

구분	구분 방법
중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mm체를 통과하고, 5.60mm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mm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5.60mm체를 통과하고,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단, 5.60mm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중·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mm체를 통과하고,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mm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팥>

등급	항목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 표준품		85.0	14.0	15.0	0.5	0.5
2 등	2 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의	등의 표준품		75.0	14.0	25.0	1.5	1.5

【기타 조건】

-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 얼룩팥, 검정팥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2.5%, 2등 3.5%, 등의 5.5%로 한다.

- ② 낱알의 굵기에 따라 팔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체눈의 직경이 4.00mm인 등근 눈의 판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의 무게비율이 70%이상인 것을 굵은팔, 70%에 미달하는 것을 잔팔으로 한다.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색택, 낱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⑦ 이종곡립 : 팔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색택, 낱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⑦ 이종곡립 : 녹두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녹두>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이종곡립·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1 등	1 등 표준품	90.0	14.0	10.0	0.5	0.5
2 등	2 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 표준품	65.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 ① 깍질의 색깔에 따라 녹색녹두, 황색녹두, 검은색녹두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로 한다.

붙임 3

2020~2023년 논콩 재배단지 현황(147개소)

□ 2020년 논콩 재배단지: 44개소

연번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호)	논 타작물 확대계획(ha)	
					'22년 실적 면적	'23년 목표 면적
1	광주	북구	들풀㈜	27	45	70
2	경기	파주	북파주농협	23	87	87
3	충남	보령	남포농협	78	70	120
4	충남	서천	벼농사름이야기	28	12	67
5	충남	예산	사리영농	37	70	100
6	전북	고창	한결	57	61.6	130
7	전북	군산	임피위탁㈜	28	12	84
8	전북	군산	하나로	118	20	75
9	전북	김제	건강쌀연구회영농	16	25	85
10	전북	김제	담덕영농	21	150	170
11	전북	김제	대영영농	22	94	93
12	전북	김제	새누리영농	31	50	86
13	전북	김제	우리미영농	25	140	166
14	전북	김제	석산한우	22	130	180
15	전북	김제	양지영농	16	115	150
16	전북	김제	에쿠스	140	40	80
17	전북	김제	월촌	15	75	90
18	전북	김제	광원	15	90	120
19	전북	김제	덕성농축산업	19	80	116
20	전북	김제	진봉농협	156	400	520
21	전북	김제	죽산공영농	43	240	270
22	전북	김제	한마음영농	35	113	120
23	전북	부안	행안공영농	15	100	122
24	전북	부안	흙뿌리영농	16	75	80
25	전북	부안	계화농협	59	74	150
26	전북	부안	하서농협	41	135	115
27	전북	부안	아그로포레스트	16	140	130
28	전북	순창	도담㈜	36	120	139
29	전북	익산	망성위탁	29	20	60
30	전북	전주	국산콩	19	33.1	61
31	전북	전주	범일위탁	16	36	70
32	전북	정읍	영원	20	73	90
33	전북	정읍	신화	29	45	80
34	전남	강진	참조은영농	18	32	95
35	전남	나주	알곡	41	50	67
36	전남	영암	영암에이스영농	44	30	75
37	전남	장성	황룡위탁영농	59	50	110
38	전남	장흥	금곡	30	52	65
39	전남	진도	친환경영농	17	45	86
40	전남	해남	산막영농	105	5.7	85
41	경북	경주	신경주농협	206	100	120
42	경북	상주	나누리	71	145	165.9
43	경북	예천	한국에코팜	19	75	80
44	경남	사천	콩사랑	35	210	250
계	7개	24개	44개소		3,765.4	5,274.9

□ 2021년 논콩 재배단지: 39개소

연번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논 타작물 확대계획(ha)	
					'22년 실적 면적	'23년 목표 면적
1	충북	괴산	㈜뜨란	25	84	101
2	충남	논산	예담영농	29	120	85
3	충남	당진	해나루영농	26	20	60
4	충남	보령	남포농업경영인영농	20	35	60
5	충남	홍성	대한경기영농	27	87	98
6	전북	부안	뜨락영농	26	28	78
7	전북	부안	하나로영농	125	28.5	80
8	전북	부안	현보영농	28	87	80.8
9	전북	부안	하이영농	20	123	65
10	전북	순창	서순창농협	47	46	170
11	전북	순창	쌍치삼암영농	16	94	125.4
12	전북	정읍	녹두한우영농	31	39.3	70
13	전북	정읍	샘골농협	26	45	40
14	전북	군산	(유)농사짓는 오빠들	58	21.5	70
15	전북	군산	개정위탁영농	45	26	71
16	전북	군산	고군산친환경영농	27	30	56
17	전북	군산	생금들친환경영농	20	51	61
18	전북	군산	수빈농장영농	15	40	77
19	전북	김제	등불영농	16	80	130
20	전북	김제	마포영농	15	92	102
21	전북	김제	무지개영농	15	51	75
22	전북	김제	햇불영농	30	142	93.2
23	전북	김제	현대영농	25	90	105
24	전북	김제	홍산아리랑영농	18	90	100
25	전북	익산	용인영농	28	80	66.6
26	전북	익산	송산미영농	547	17.6	54.4
27	전북	익산	채움영농	28	40	58.9
28	전북	익산	춘포참살이영농	33	35	68
29	전남	곡성	옥과농협	36	105	135
30	전남	무안	㈜임식들	41	51	69.3
31	전남	영광	행복이가득한드림	102	45	85
32	전남	영암	군서농협	34	29	65
33	전남	장성	하누리영농	38	20	25
34	전남	해남	미래영농	85	50	100
35	전남	해남	산호영농	17	8	72
36	전남	해남	서해남영농	90	31	94
37	전남	해남	현산농협	41	20	85.8
38	전남	해남	가온누리영농	47	20	30
39	전남	화순	황금햇살㈜	17	25	55
계	4개	17개	39개소		2,126.9	3,117.4

□ 2022년 논콩 재배단지: 39개소

연번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논 타작물 확대계획(ha)	
					'22년 실적 면적	'23년 목표 면적
1	경기	이천	모가영농	35	22.5	52
2	경기	평택	남양식품㈜	30	80	80
3	강원	영월	승당농산물가공영농조	26	39	49
4	충남	논산	황산별영농조합법인	78	3.3	20
5	충남	논산	부적농협	63	45	50
6	충남	서천	아름드리친환경영농	26	13	25
7	전북	고창	흙이좋아영농	33	20	60
8	전북	고창	중우축산영농	28	110	40
9	전북	김제	미우미피해영농	34	61	71
10	전북	김제	장귀영농	25	52.8	62.8
11	전북	김제	심포농업법인	27	39.3	49.3
12	전북	김제	부량공영농	25	80	85
13	전북	부안	당그레영농	28	35.6	65
14	전북	익산	두드림영농	25	90	97
15	전남	강진	농업회사법인 진양㈜	58	10	43
16	전남	강진	웰그린영농	21	30	40
17	전남	고흥	대룡영농	26	10.6	26.6
18	전남	나주	봉황농협	252	49	60
19	전남	무안	농업회사법인 서호(유)	70	35	50
20	전남	무안	다한영농	16	13	40
21	전남	보성	득량만영농	28	79.3	80
22	전남	보성	초지한우	17	43.6	45
23	전남	순천	낙안형제영농	22	18	40
24	전남	신안	시골아재영농	24	20	35
25	전남	영광	지내들영농	44	13	50
26	전남	장흥	녹원정미소영농	27	33	55
27	전남	화순	능주농협	204	10	25
28	전남	화순	천운농협	15	42	52
29	전남	해남	담아	28	56.4	48
30	전남	해남	혜은농장영농	19	26.3	40
31	경북	경주	광원영농	15	36.7	120
32	경북	구미	무을농협	51	14.5	50
33	경북	김천	우리들농장	16	40	40
34	경북	문경	흙무지영농	16	43.8	65
35	경북	문경	서문경농협	48	147	180
36	경북	상주	함창농협	118	56	70
37	경북	안동	서안동농협	38	27	50
38	경남	의령	운암영농	26	7	20
39	경남	합천	정원영농	26	12	35
계	7개	28개	39개소		1,564.7	2,165.7

□ 2023년 논콩 생산단지(25개소, 1차사업대상자)

연번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논 타작물 확대계획(ha)	
					'22년 실적 면적	'23년 목표 면적
1	충남	부여	여울영농법인	16	10.5	13.2
2	전북	군산	옥구농협	1,584	15	25
3	전북	고창	유성영농법인	36	10.5	13.1
4	전북	김제	가야농축산영농법인	16	23	30
5	전북	김제	서도영농법인	15	37	55
6	전북	김제	백산농협	15	9.2	12.2
7	전북	부안	한국농축산프렌즈	16	32	40
8	전북	익산	뿌리깊은영농법인	15	24	30
9	전북	익산	오가늑팜영농법인	15	15	15
10	전북	익산	용연영농법인	25	20	25
11	전북	익산	신용안영농법인	15	37	45
12	전북	익산	강한영농법인	28	9	16
13	전북	정읍	한흙축산영농법인	24	52	60
14	전북	정읍	하이마블영농법인	15	37.5	45
15	전남	강진	착한영농법인	171	27	30
16	전남	무안	㈜부부영농법인	84	14	40
17	전남	무안	우리축산영농법인	35	85	107
18	전남	신안	쌀맛나는영농법인	51	12	20
19	전남	영광	칠산영농법인	27	6.8	30
20	전남	영광	팜라이스영농법인	28	6.8	30
21	전남	영암	하모니영농법인	37	2.3	10
22	전남	함평	진례금송영농법인	63	3	20
23	경북	구미	샘물영농법인	57	105.1	125
24	경북	경주	방어리영농법인	30	11.5	36.5
25	경남	합천	해와인공합자회사	22	20	40
계	5개	15개	25개소		625.2	913